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제225회 임시회

검토보고서

2018. 10. 25 (목)

순서	검 토 안 건	제 안
1	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	구청장



행정건설위원회

(전문위원 유준상)

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조례안 ”

검 토 보 고

(보고자 : 전문위원 유준상)

1. 제안경위

- 제안자 : 마포구청장
- 제안일 : 2018. 10. 15.
- 회부일 : 2018. 10. 19. (의안번호 :18 - 82)

2. 제정이유

범죄예방과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 등 (안 제1조 ~ 제4조)
-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(안 제5조 ~ 제10조)
- 통합관제센터의 구축·운영(안 제11조 ~ 제19조)
- 영상정보의 수집·이용·제공 등(안 제20조 ~ 제26조)
-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(안 제27조 ~ 제31조)

4. 관계법령

-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~ 제27조
-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(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- 45호)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범죄예방, 교통단속 등 공익목적으로 설치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의 체계적인 설치·운영 및 효율적인 CCTV 통합관제센터 관리를 위해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.
- 주요내용으로는
본 조례안은 총 6장 32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,
- 안 제1장(총칙)에서는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목적, 정의, 적용범위, 전담부서의 지정 등을 규정하였고,
- 안 제3조(적용범위)에서는 범죄예방, 시설안전, 화재예방, 교통정보수집, 법규 위반단속(무단투기단속 등) 같이 공익을 위하여 실내가 아닌 공개된 장소에 설치·운영 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CCTV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·이용·제공되는 영상정보관리 관하여 규정하였음.
- 안 제2장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)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근거한 사항으로 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까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기준, 설치·운영, 의견수렴, 안내판의 설치 등, 조작 및 기능, 유지보수업무 등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였음.
- 안 제3장(통합관제센터의 구축·운영)은 안 제11조부터 안 제19조까지 통합관제센터의 구축,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, 관제의 범위, 통합관제센터의 운영, 인력확보 등, 관제요원의 근무, 출입자 통제 등, 교육의무, 권한의 수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음.

○ 안 제4장(영상정보의 수집·이용·제공 등)은 안 제20조부터 안 제26조까지 영상정보 보호원칙, 영상정보의 수집 제한, 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, 열람 등의 요청, 영상정보에 대한 보호조치 등, 영상정보의 보관 및 삭제, 비밀유지 의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음.

○ 안 제25조(영상정보의 보관 및 삭제)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(개인정보의 파기)를 근거로 안 제25조제3항 내용 중 관계기관에 제공된 영상정보는 그 목적이 종료된 즉시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을 파기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○ 안 제5장(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)은 안 제27조부터 안 제31조까지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, 위원의 임기·해촉, 위원회의 기능, 위원회의 운영 등, 수당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음.

○ 안 제6장(보칙)은 안 제32조(시행규칙)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.

○ 검토의견으로는

본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, 같은법 시행령 제 22조부터 제27조까지 및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장에 규정한 내용이며 정보통신기기의 발전으로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초상 및 활동정보가 수집되어 무단 공개되거나 유출되는 등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은 만큼 공공기간은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최소한으로 설치·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,

- 본 조례안은 종전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방법용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체하는 것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 상위법령에 규정된 기준을 마련하여 법적 시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